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6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강대식 · 진종오
고동진 · 이현승 · 김예지
김선교 · 추경호 · 이달희
최보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,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(12.3%)에 이르고 있고,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 · 안전수칙 · 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

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,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등).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한국어 구사능력”을 “말하기·듣기·읽기·쓰기 등 한국어 구사능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6항”으로, “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으로 한다.

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.

1.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
2.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·안전수칙·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
3. 그 밖에 취업 및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이라 한다)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직무 및 산업안

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.

제3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) ① (생략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<u>한국어 구사능력</u> 을 평가하는 시험(이하 “ <u>한국어능력시험</u> 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, 평가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7조(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-말하기·듣기·읽기·쓰기 등 한국어 구사능력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③ <u>한국어능력시험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.</u> 1. <u>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</u> 2. <u>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·안전수칙·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</u> 3. <u>그 밖에 취업 및 한국 생활</u>

<신 설> ③ · ④ (생 략)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이라 한다)으로 하며,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3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<u>적응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④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이라 한다)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. ⑤ · ⑥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 ⑦ 제6항----- -----한국산업인력공단----- ----- -----. 제32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
---	--

부과한다. <u><신 설></u> 1. (생 략) 2. ~ 10. (생 략) ② (생 략)	-----. <u>1.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</u> <u>인근로자에게 한국어 보수교</u> <u>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</u> <u>1의2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u> 2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